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관 광 진 흥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에서 “법 제24조에 따른 카지노업 및 제31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”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근거 부재

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“법 제24조에 따른 카지노업 및 제31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”를 추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 마련(안 제66조의2제1항 제8호 및 제9호 신설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(2023.6.15.~7.25.)

3)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의2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법 제24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

9. 법 제31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6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	제66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(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8. 법 제24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
<u><신설></u>	9. 법 제31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860